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396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3. 19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에 대한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
 - 나. 2023. 6. 8.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9,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3동 약 220㎡와 농작물을 수거하고,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3. 6. 8.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4,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에 대한 수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(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2819, 2820 판결 등 참조),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원고는 ‘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을 수거하라.’고 주장할 뿐, 수거를 구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의 위치, 종류, 면적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. 기록상 이 부분 소에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.

결국 이 부분 소는 목적물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.

2.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의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

○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○ 판단

-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의 퇴거청구 부분: 퇴거란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

의미한다. 퇴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,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퇴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.

-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에서의 퇴거청구 부분: 후술하는 것처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청구 부분을 인용한다면, 원고로서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에서의 퇴거청구 부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. 다시 말해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청구 부분과는 별도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에서의 퇴거청구 부분을 인용할 실익이 없다. 그러므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에서의 퇴거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3.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

-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- 판단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)

4.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-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○ 판단

- 인용하는 부분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)

- 일부 기각하는 부분: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임대차기간 2023. 6. 8.부터

2024. 6. 7.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 669,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그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.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.

판사 황용남

별지